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3. 10. 19

운 영 위 원 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1993. 10. 15 - 장창조위원외 7인

나. 회부일자 : 1993. 10. 15

다. 상정일자 : 제27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2차 운영위원회('93. 10. 19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장창조위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개정('92. 9. 17)됨으로 인하여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지역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

나. 주요골자

- 현지 교통비를 지역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조정(조례 별표 1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김진수 전문위원)

- 사하구 의회위원의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지 교통비를 의장, 부의장은 갑지, 을지 지역구분없이 5,000원, 의원은 갑지, 을지 구분없이 4,500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토록 조례를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